

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

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처리기한 : 접수일로부터 7일

신 청 인	성명	(한글)	주민등록번호	-
		(영문)		
카 드 정 보	주소(거주지)			
	휴대전화번호	(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:)		
	SMS 수신동의	[]예(선택 시 카드발급 상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) []아니오		
	발급 구분	[]신규 발급	[]기존카드 재사용(제휴카드 및 발급방법 미작성)	
제 휴 카 드	제휴카드	[]NH농협카드(해당 은행 계좌 보유 필수)	[]신용카드	[]체크카드
		[]신한카드	[]신용카드	[]체크카드
	발급방법	[]은행방문 (체크카드만 가능)	[]우편(전화신청)	[]우편(모바일신청)

신청시 유의사항

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할 수 없으며,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계좌를 발급받은 때에는 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, 수강 또는 지원·용자의 제한,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①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
①-2 「군인연금법」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(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및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60조의2제4항(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) 적용자 제외)
 - ② 만 75세 이상인 사람
 - ③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(단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, 「난민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·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 등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중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피보험자인 사람은 카드발급 가능)
 - ④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·용자·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
 - ⑤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
 - ⑥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(또는 사업)에 참여하는 사람(사업주훈련 제외)
 - ⑦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(단,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카드발급 가능)
 - ⑧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(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 제외)
⑧-2 대학(원) 재학생 중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사람(단, 원격대학의 재학생은 제외)
 - ⑨ 월평균 임금(소득)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(만 45세 미만)·월평균 임금(소득)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- ⑩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임)
 - ⑪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의 대표자
 - ⑫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대표자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
 - ⑬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(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신청서 등 검토 후 결정)
- ※ 다만, 국·내외 경제사정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카드발급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수강가능한 훈련과정 종류와 지원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신청자격 관련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위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, 수강 또는 지원·용자의 제한,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듣고 모두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(뒤쪽)

지원대상 구분

지원대상		제출서류 또는 확인사항
[] 실업자		· 고용센터 확인(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)
[] 재직자		· 고용센터 확인(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) - 단, 고보미가입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
[] 자영업자	피보험자인 자영업자	· 고용센터 확인(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)
	일반 과세자	· 사업자등록증(휴업사실증명원) ·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·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의 경우) ※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
	간이과세자	· 사업자등록증
	신용회복지원확정자	·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
	법인의 대표자	· 소득금액증명원 등
	고유번호 발급 단체 대표	· 소득금액증명원 등
[] 특수형태근로종사자		· 위촉(재직)증명서 ·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
[]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		·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
* 학생인 경우에도 근로여부 또는 소득 상황에 따라 위 지원대상 구분을 체크해 주십시오		

신청인 최종학력 (필수) ※본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.

[] 초등학교 [] 중학교 [] 고등학교 [] 2~3년제 대학교 [] 4년제 대학교
 [] 대학원(석사) [] 대학원(박사) [] 학점은행제 [] 무학 [] 기타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'담당자 확인사항'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,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귀하

*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처리절차

신청서 제출 —▶ 접수 —▶ 확인·검토 —▶ 결재 —▶ 전산입력 —▶ 통보

※ 아래 란은 고용센터 담당자 업무를 위한 사항으로 적지 않습니다.

※ 접수	접수 연월일	접수번호	처리부서	선 람	소(과)장	팀장	담당
※ 처리	[] 발급 [] 미발급 (사유:)						
※ 결재	담당		팀장		소(과)장		결재 연월일
							.